

김영남 디자인보호법 진도별 기출문제 제1판 정오표

문제번호	정정 전	정정 후
86번	<p>문제</p> <p>③ 2이상의 물품이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한 별 물품의 구분의 어느 것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한 별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.</p>	<p>문제</p> <p>③ 2이상의 물품이 전체로서 통일성이 없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한 별 물품의 구분의 어느 것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한 별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.</p>
90번	<p>해설</p> <p>④ 설정등록 이후에도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제36조 규정 주장 가능하다. 제36조 제2항 3호,4호</p>	<p>해설</p> <p>④ 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 상실 예외에 대한 절차(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시기)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, 디자인권자는 언제든지 신규성 상실 예외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서류의 제출이 가능하다.</p>
96번	<p>문제</p> <p>①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자진보정하는 자는 그 보정하는 때에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를 취할 수 있다.</p>	<p>문제</p> <p>①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자진보정하는 자는 그 보정하는 때에도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주장 및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</p>
	<p>해설</p> <p>①</p>	<p>해설</p> <p>① 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 상실 예외에 대한 절차(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시기)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, 출원인은 언제든지 신규성 상실 예외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서류의 제출이 가능하다.</p>
165번	<p>해설</p> <p>⑤ 제36조 제2항, 출원시뿐만 아니라 제36조2항2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지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</p>	<p>해설</p> <p>⑤ 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 상실 예외에 대한 절차(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시기)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, 출원인은 언제든지 신규성 상실 예외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서류의 제출이 가능하다.</p>